

# 연좌제와 ‘대살(代殺)’을 중심으로 본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대살의 연원, 연좌제
  - 2.1 전근대 시기 친족-마을공동체 통치 수단인 연좌제
  - 2.2 젠더의 측면에서 본 연좌제
- 3 해방 후 국가 형성기의 연좌제와 대살
  - 3.1 해방 후 사회정치운동과 친족-마을공동체의 역할
  - 3.2 국가 형성기의 민간인 학살과 연좌제
- 4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의 목적과 기능
  - 4.1 전과(戰果) 보충과 교전 보복
  - 4.2 보급기지 차단과 남성 행위자 가문 재생산 방지
  - 4.3 전투 보수 충당을 위한 약탈
  - 4.4 점령 의례 실현
- 5 결론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321)

## 국문초록

한국에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에 위로부터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과 분단정부 반대 운동을 진압하는 데 전근대의 형벌인 연좌제가 활용됐다. 국가 형성 과정에 양측의 대립은 내전 형태로 전개되면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연좌제는 정치적 반대자나 지역민을 소위 ‘적성(赤性)분자’, ‘적성(赤性)부락’으로 선별해 섬멸하면서 반공 종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때 학살 대상을 선별하는 수단이 됐다. 연좌제 기반 학살에서 전시 비전투원이 대다수인 여성들이 남성 가족 구성원 대신 학살됐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됐다. 여성 대살과 전시 성폭력은 ① 전과(戰果) 보충, ② 교전 후 민간인 공동체에 대한 보복, ③ 보급기지 차단과 ‘잠재적 적성분자’에 대한 예방 학살, ④ 집권 세력이 적으로 간주한 남성들의 가족공동체 재생산 방지, ⑤ 군인의 전투 스트레스 해소와 전쟁 복무 보수 지급, ⑥ 점령 의례 실현 등을 목적으로 나타났다. 연좌제 기반 학살에서는 가족이나 부계 혈통의 친족공동체, 이들과 결합한 마을공동체나 특정 집단이 선별 단위가 됐고 여성과 아이도 적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 보았으므로 이때의 여성 학살은 전시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국문핵심어: 한국전쟁, 여성 민간인 학살, 전시 성폭력, 연좌제, 대살(代殺)

### 1 들어가며

2018년 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은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중리3구 뒤터골 금광굴 자리)에서 유해 144구를 발굴했다. 발굴한 유해의 성별과 연령을 분석한 결과, 여성 성인이 68명, 남성 성인이 19명, 성별 미상 성인 16명, 성별 불문 12세 이하 아동은 41명으로 여성과 아동의 비중이 컸다.<sup>1</sup> 이처

---

1 아산시·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 『충남 아산시 배방읍(설화산) 폐금광 유해발굴 조사보고서』, 2018, 67쪽.

림 전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에서는 여성이 상당수 학살됐다. 또한, 곳곳에서 군경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자행됐다.

전시 여성 민간인 학살 연구는 국외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홀로코스트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sup>2</sup>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후 좀 더 진전됐다. 이와 별도로 전시 성폭력 연구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확산하면서 연구가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문제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해서인지 학계의 연구가 거의 없었다. 여성과 한국전쟁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유가족 연구가 대부분이고, 전시 성폭력 연구와 한국군 위안부 연구가 소수 있다. 근래에는 김상숙이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의 보고서 기록을 분석해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글을 발표했고,<sup>3</sup> 국가에 의한 젠더폭력의 과거청산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sup>4</sup>

전자의 논문은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중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사건보고서 162편과 종합보고서 1편을 검토해 여성 피살자 수를 집계하고 피살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여러 보고서에 흩어져 있는 전시 성폭력 관련 기록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을 보면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해 신원을 확인한 여성 피살자 중 당사자에게 특정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군경이 불법적으로 학살한 여성은 5%였다.<sup>5</sup> 반면, 피살 사유가 ‘대살(代殺)’이라고 기록된 여성은 24%에 달했다.<sup>6</sup> 이를 보면, 한국전쟁 전후에 여성들은 당사자

---

2 Esther Katz & Joan Miriam Ringelheim eds., *Women Surviving the Holocaust*, New York: Institute for Research in History, 1983. 등.

3 김상숙,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1기 진실화해위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31호, 한국사회사학회, 2021a.

4 김상숙, 「젠더폭력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공 TRC의 시도를 통해 본 한국 진실화해위의 과제」, 『NGO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NGO학회, 2021b.

5 여성동맹 활동, 입산자, 보도연맹원, 부역 혐의, 기타 활동가였거나 특수신분이라는 이유로 학살된 사람, 형무소 수감 중 병사·고문사한 사람, 국가기관 자료(「처형자 명부」, 「부역자 명부」 등)에 기재된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김상숙, 앞의 글(2021a), 78쪽.

6 위의 글, 61쪽.

특정 혐의를 이유로 학살된 경우보다 대살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전쟁과 여성 민간인 학살 문제를 연좌제와 연좌제를 기반으로 한 ‘대살(代殺)’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 대살의 기원이 되는 연좌제를 살펴보고, 대살이 해방 후 국가 형성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전쟁 전후에 나타난 여성 민간인 학살의 목적과 기능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젠더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전후에 여성 민간인들은 특정 젠더를 겨냥한 젠더사이드에 의해 학살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비전투원이 대다수인 여성의 학살 양상과 특징을 밝히는 것은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과 한국전쟁 연구 및 젠더폭력 관련 연구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 2 대살의 연원, 연좌제

### 2.1 전근대 시기 친족-마을공동체 통치 수단인 연좌제

이 글에서는 먼저 대살의 연원이 되는 전근대 시기의 연좌제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연좌제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족까지 처벌하던 제도이다. 연좌제의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족을 멸하는 관습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고조선과 부여 등 부족국가 시대부터 연좌제를 이용해 사회를 통치했다. 삼국시대에는 왕권에 도전한 반역죄인은 멸족형에 처했다.<sup>7</sup> 고려와 조선에서는 명률, 당률 등 중국 법을 국내 형법에 적용해 연좌제를 시행했다. 연좌제는 주로 정치범죄, 즉,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왕권을 위협하던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형벌이었으며, 고려 말이나 조선 초 등 개국 시기에 집권 세력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sup>8</sup> 실제로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7 이동명,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연구」, 『법학연구』 제34호, 한국법학회, 2009, 6-7쪽, 10-11쪽, 14쪽.

8 김영범, 「연좌제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망: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24호, 한국사회사학회, 1990, 324-325쪽.

영조-고종대 연좌제 적용 실태를 기록한 문서인 『연좌안』에 수록된 주요 사건을 보면, 역모·반란 등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9</sup>

연좌제는 친족 연대책임에 의한 범죄 예방, 개인 일탈 방지 등의 정치적 기능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국가는 실정법 체계 외에도 지방사회 사족 자치 질서를 통한 이원적 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됐는데, 가족과 친족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일탈을 통제하여 사회·국가체계를 유지했던 것이다.<sup>10</sup> 연좌제가 왕조 개창기의 왕권 확립 과정에 권력 투쟁 패배자의 친속을 절멸해 지배 체제에 대한 이반을 사전에 분쇄하는 기능을 했으므로, 일종의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sup>11</sup>

필자는 연좌제가 친족공동체가 주도하는 향촌 사회, 즉, 지방 말단 단위인 마을공동체에 대한 통제와 통치 기능을 발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국가권력은 군과 현 아래의 면, 리에는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었기에 지방은 중앙 권력의 통치가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촌 사회는 기본적으로 토호 등 토착세력을 중심으로 신분제와 지주제, 친족관계 등에 기반을 두고 유지됐다. 전근대 시기의 가족은 핵가족이나 확대가족보다는 친족공동체, 가문을 뜻하며, 특정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부계 혈통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일가까지 포괄하는데,<sup>12</sup> 한국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동족마을에서는 마을 구성원 사이에는 ‘일가주의’, ‘친족 중심주의’ 등의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했고,<sup>13</sup> 친족공동체는 ‘집합적 행위자’로서 마을공동체의 대소사를 이끄는 주요한 사회정치적 단위였다.<sup>14</sup>

---

9 심재우, 「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5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100쪽.

10 위의 글, 90쪽.

11 김영범, 앞의 글, 342-346쪽.

12 권현익,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111쪽.

13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권 제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11쪽;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돌베개, 2010, 32쪽.

14 이와 관련해 권현익은 인류학자 모건이 친족의 기능을 소시에타스(사람들의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조직)와 시비타스(영토와 재산에 기초한 정치적 사회)로 구분했던 것을 강조하며, 친족조직도 일종의 독자적인 정치적 실행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현익, 앞의 책, 39쪽.

이러한 상황에서 연좌제는 중앙권력이 친족-마을공동체를 복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 통제 수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 시기 국가권력은 친족공동체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왕권에 도전하는 반란 세력을 연좌제를 통해 선별, 분리하고, 이들을 징치하고 해체·절멸하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국가의 권위에 복속하게 만들어 지역 말단 단위인 향촌 사회를 통제하고 재편성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연좌의 종류에는 범죄 당사자의 가족·친족에게 부과하는 혈연적 연좌(緣坐)와 범죄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동료 관리 등 비혈연적인 관계에도 부과하는 지역적 연좌(連坐)가 있었다. 그러나 ‘連坐’와 ‘緣坐’를 엄격히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고, 혈연적인 경우에도 ‘連坐’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sup>15</sup> 전근대 시기에는 사실상 친족공동체와 마을공동체가 융합된 사회였기에 가족 연좌(緣坐)와 지역 연좌(連坐)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 2.2 젠더의 측면에서 본 연좌제

한편, 여성에게는 연좌제가 어떻게 적용됐을까?

우선, 연좌제는 부계 혈통주의에 의해 시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경우 연좌제 시행의 근거가 됐던 중국의 법전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의하면, 범행 당사자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인 아들, 모녀, 처첩, 조손, 형제, 자매, 아들의 처첩 등은 공신의 집에 노비로 삼으며, 재산은 모두 관에 몰수하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형제의 아들은 모두 유삼천리(流三千里) 안치형(安置刑)에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sup>16</sup> 즉, 연좌 범위는 조부에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5대에 이르지만 외가나 처가 식구들, 출가자, 혼처가 정해져 있는 딸 등은 연좌 대상에서 제외했다.<sup>17</sup>

그러나 실제로는 연좌제 형벌의 대상이 된 여성의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었

15 김영범, 앞의 글, 324쪽.

16 『대명률직해』 권18, 刑律 盜賊「謀反大逆」; 심재우, 앞의 글, 91쪽.

17 위의 글, 93-94쪽.

다. 앞서 언급한 심재우의 연구에는 영조-고종대 『연좌안』에 기록된 주요 사건의 범죄인 18명과 그 가족 106명의 인적 사항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sup>18</sup> 이 표에 적힌 사람들을 성별로 나눠 보면 범죄 당사자인 18명은 모두 남성이며, 이 사람과 관련해 연좌제가 적용된 가족 구성원은 남성이 60%(64명), 여성이 40%(42명)에 이른다. 여성 중에는 범죄인과 같은 성씨의 혈족이 아닌 처첩, 자부의 비중이 20명으로 연좌제가 적용된 전체 가족 구성원의 19%에 이른다. 즉, 연좌제 형벌을 가할 때 부계 혈통주의를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처첩과 자부 등이 연좌제 적용의 1차 대상에 포함되면서 여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면 이처럼 여성에게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좌제는 젠더를 선별해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성 가족 구성원에게 연좌제가 적용된 것과 여성 가족 구성원에게 연좌제가 적용된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고려시대의 연좌제 실상에 관한 김난옥(2009)의 연구와 조선시대의 연좌제 실상에 관한 심재우(2011)의 연구를 참조해볼 때,<sup>19</sup>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여성의 죄로 남성이 연좌된 사례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더구나 전근대사회의 친족공동체는 부계의 남성 중심 공동체였다. 여성도 친족공동체 안에서 성별 분업에 의해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사적 영역에서 부계 중심 공동체의 재생산과 유지에 치우쳐져 있었으며, 그 과정도 대등한 주체가 아닌 내조자라는 종속적 지위에서 수행했다. 더구나 당시 여성은 남성 가장이나 그가 속한 친족공동체의 자산으로 간주하기조차 했다. 이처럼 공적 영역 진출이 제한된 사회에서 사회정치 활동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한 여성에게 적용한 연좌제는 공동체 연대책임의 주체로서 남성에게 적용한 연좌제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여성에 대한 연좌제 적용은 봉건 국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인 특정 남성을 처형할 때, 남성 가장이나 그가 속한 친족공동체의 자산으로 간주했던 여성을 공노비화함으로써 정치적 패배자의 가산을 정리하고 그 전리품을 국가에

18 위의 글, 102-103쪽, 106-107쪽.

19 김난옥, 「고려 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45쪽; 심재우, 앞의 글, 102-103쪽, 106-107쪽.

귀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아내와 딸의 정조가 가장의 재산이자 명예로 여겨지던 사회에서, 여성을 성폭력이 수반될 수 있는 공노비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 패배자와 그가 속한 가문-친족공동체에 속한 남성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 패배자 가문의 재생산을 막아 그 후손들의 보복을 막고 특정 세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물리적으로 근절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여성 당사자가 겪는 피해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 보다는 여성을 소유한 남성이 입는 피해를 염두에 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 3 해방 후 국가 형성기의 연좌제와 대살

연좌제는 19세기 말까지 존속하다가 갑오개혁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런데 전근대적인 형벌로서 향촌 사회 통치 수단이자 내란 평정 수단이었던 연좌제가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의 주요 기제로 작동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분석하려면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한국 사회의 상황을 친족-마을공동체와 신생 국가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1 해방 후 사회정치운동과 친족-마을공동체의 역할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는 국가 형성기이자 현대 한국 사회의 틀이 형성된 시기이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외세에 의해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위로부터 근대국가가 형성됐고 국가가 사회를 주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이때 국가가 위로부터 사회를 주도하는 과정은 단순히 중앙의 국가기구가 치안과 행정 권력을 지방의 하부구조에 이식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전국 각지에서 일제가 물러난 후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지역민들

<sup>20</sup>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18쪽.



사이에 아래로부터 자주 국가 건설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당시 인구의 90%를 차지하던 농촌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들은 친족공동체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했고, 이 공동체들은 지방 권력의 주요 토대이자 주요 정치적 단위로 부상했다. 더구나 해방 직후 친일 잔재 배격의 움직임과 함께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개혁’의 슬로건을 앞세운 사회주의 이념이 마을 단위까지 전파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지식인이 지역 지도자로 부상하고 그 가족, 친족은 사상의 전파 단위가 됐다. 이는 전국 각 지역에 ‘○○의 모스크바’라고 불리는 수많은 ‘민주 부락’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1946년에는 미군정의 식량정책과 친일파 등용에 저항하는 10월 항쟁이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1948년에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2·7항쟁과 제주 4·3항쟁이 일어났다. 1948년 8월과 9월, 남북 각각에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역민들은 국가관이나 국민 의식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념보다 일가주의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상태에서<sup>21</sup> 분단정부 반대운동을 계속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유격대 운동을 벌였다. 즉, 친족-마을공동체는 해방기, 국가 형성기에 중앙 권력 공백 상태에서 아래로부터 진행된 자주적 국가 건설과 분단정부 반대 운동의 주요 토대이자 정치사회적 기초단위 역할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중 일부는 정치 주체로 나섰다. 지식인 여성들은 조선부녀총동맹(1945년 12월 결성, 1947년 2월 남조선여성동맹으로 개칭, 이하 ‘부총’이라 함) 등 여성 독자 조직을 만들어 공창제 폐지 운동 등을 펼쳤다. 해방 직후에는 농촌 지역에서도 ‘남녀 동권’ 등의 구호가 나타났다는 증언이 있으며,<sup>22</sup>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나섰다. ‘쌀 배급 반대 시위’와 같은 빈민들의 대중적 정치 투쟁에서는 여성이 선도적으로 나섰다,<sup>23</sup> 이 시위는 1946년 10월 항쟁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한 축이 됐다. 1947년 이후 이러

21 박찬승, 앞의 책, 32쪽.

22 김상숙,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돌베개, 2016, 46쪽.

23 정영진, 『폭풍의 10월』, 한길사, 1990, 308-309쪽.

한 활동은 미군정의 탄압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부총은 지도자들이 월북하면서 와해됐고, 학생들과 노동자들도 비합법 상태에서 활동했다.

운동의 중심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하면서, 농촌에서는 다수의 여성이 친족공동체 안에서 성 역할 분업 속에 정치 활동에 동참했다. 입산자 가족 여성들이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하면서 ‘빠라’를 붙이고 야산대(1948년 이후 유격대로 발전)의 식량을 조달하거나 입산했다는 증인은 다수 있다.<sup>24</sup> 이러한 활동은 가부장제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수행한 것이고,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 지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정치 단위로서 친족공동체의 역할이 두드러지던 시기에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자주성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 3.2 국가 형성기의 민간인 학살과 연좌제

당시 외세의 힘으로 들어선 신생 국가기구는 아래로부터 분단정부 반대 운동의 토대가 됐던 주요한 친족-마을공동체를 선별하여 배제하고 이념적 기준에 의해 말단의 지방 권력을 통제하고 포섭하는 과정을 통해 반공 국가의 하부단위로 구축하여 통치 주도권을 획득해나가고자 했다. 분단정부 반대 세력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과정에는 연좌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이 시기에는 연좌제가 조선시대처럼 성문화된 형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말단 기초 단위에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됐고 토벌 전략을 세우는 데도 활용됐다. 일례로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경찰 고위 관료였고 1948년 10월부터 제주경찰청장으로서 진압의 선봉에 섰던 홍순봉은 1948년 4월에 이미 「제주 4·3 토벌대책안」을 기안했는데, 이 안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만주에서 항일유격대 토벌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던 ‘치안 숙정 공작’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당시 일제는 ‘치안 숙정 공작’ 방식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활용했다. ① 치료(治表) 공작: 군경의 무장력에 의한 토벌

---

24 변숙현 구술자료(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21\_007\_변숙현\_06.hwp); 진실화해위원회,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09f, 788쪽 등.

과 체포(귀순) 활동. ② 치본(治本) 공작: ‘비민(匪民) 분리’를 위해 집단부락 건설, 교통·통신 시설 완비 등을 통해 민중 무장 조직의 생존 조건을 봉쇄해 이들이 자연적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공작 활동. ③ 사상 공작(혹은 선무 공작): 민중에게 선전 활동 등을 통해 공산주의 및 반만 항일의 사상을 방비하는 공작 활동.<sup>25</sup> 이를 본떠 홍순봉이 기안한 이 「대책안」은 이승만 정부의 제주 4·3 항쟁 진압의 기본 지침이 됐고,<sup>26</sup>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의 전략으로도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비민 분리’와 ‘반공 사상전’을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전략은 분단정부 반대 세력을 ‘공비’로 규정한 뒤, 공비(계릴라)의 물적·인적 기반이 되는 특정 가족과 마을을 선별해 제거하는 것이다. 주로 계릴라가 소속되거나 계릴라 활동에 우호적인 친족공동체가 있던 마을을 선별해 ‘통비부락(通匪部落)’ 또는 ‘적성부락(赤性部落, 빨갱이 마을)’이라고 호명했으며, 통비부락의 주축이 되는 친족공동체는 적성(赤性) 가문으로 규정되고 통제의 표적이 됐다. 통비부락의 선별과 토벌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 연좌제가 적용됐으므로, 비민 분리 과정은 전근대시기에 내란을 평정할 때처럼 가족 연좌와 지역 연좌가 융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을 토벌, 해체하고 복속 대상인 나머지 마을의 주민들은 우익 청년단을 조직하거나 전략촌을 건설해 이주시킨 다음 반공 사상교육을 해 토벌의 가해자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반공공동체를 새로이 주조하고자 했다.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 전부터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자행했던 민간인 학살은 1946년 8월의 화순탄광 사건에 이어 10월 항쟁 시기부터 나타났지만, 제주 4·3 항쟁과 여수·순천 항쟁(이하 ‘여순 항쟁’이라 함) 이후 군경토벌 작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나타나 지역 내전의 양상으로 전개됐다.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개전 후에는 대규모 예방 학살의 형태로 전면화했다. “한국전쟁 초기 약 3개월간에는 전선에서 전투로 죽은 전투원 수보다 한국 군경에 의해 예방

25 중국조선족문화예술인후원회, 이상규 역, 『만주국 경찰사』, 중국조선족문화예술인후원회, 2007, 204쪽; 윤휘탁, 『일제하 만주국 연구』, 일조각, 1996, 130쪽에서 재인용.

26 양봉철, 「홍순봉과 제주4·3」, 『4·3과 역사』 제17호, 제주4·3연구소, 2017, 44-46쪽, 140쪽.

학살된 민간인이 더 많았다.”<sup>27</sup>라는 보고도 있다. 한국전쟁 시기에 반공사상전과 연좌제를 바탕으로 한 민간인 학살은 제도화됐고 수많은 지역공동체가 초토화됐다. 이승만 정권은 민간인 학살을 1954년까지 계속했다. 이러한 학살은 건국운동의 주축이었던 지역 진보세력의 배제와 절멸 과정, 특히 대중과의 접점에 있던 친족-마을공동체의 말살 과정이 됐다.

이 시기 여성들은 얼마나 학살되었을까? 앞서 언급한 김상숙의 연구(2021a)를 보면, 1기 진실화해위 사건보고서에 기록된 사람 중 신원이 확인된 피살자 수는 모두 17,407명이고 그중 여성 피살자는 약 12%인 2,159명이었다. 여성 피살자는 호남지역은 9·28 서울 수복 후 군경토벌 사건에서, 영남지역은 개전기(1950.6.25.~1950.9.27.) 미군 사건에서, 중부지역은 9·28 서울 수복 후 부역 혐의 사건에서 많이 나타났다. 연령은 미성년자가 34%를 넘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①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서는 개인 선별에 의해, ② 부역 혐의 사건에서는 가족·일가 단위 선별에 의해, ③ 군경토벌 사건과 미군 사건에서는 마을 단위 또는 군집 단위(피난민 무리 등)로 학살된 경우가 많았으며, ③의 유형으로 학살된 피살자 수가 가장 많았다.<sup>28</sup>

#### 4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의 목적과 기능

전근대 시기와 달리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는 연좌제가 형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시 민간인 학살과 결합해 민간인 선별 처형 과정에 관습법적 형태로 나타났으나 적용 범위가 훨씬 넓었고 처벌 내용도 더 가혹했다. 연좌제를 바탕으로 한 학살 과정에 전시 비전투원이 대다수인 여성에 대한 학살은 기본적으로 대살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 학살에는 상당수의 경우 ‘전시 성폭력’이 동반됐다. ‘전시 성폭력’은 내전, 정부 간 전쟁, 군사 점령 기간 등에 무장한 행위자(국가군, 반군, 정부 민병대 등)가 자행한 성폭력을 의미한다. 여성 민간인 학

---

27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연구』 제14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0, 108쪽.

28 김상숙, 앞의 글(2021a), 92쪽.

살과 전시 성폭력은 교집합을 이루기도 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같은 목적과 기능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연좌제와 결합한 민간인 학살 과정에 나타난 여성 대살과 전시 성폭력은 어떤 목적과 기능이 있었을까?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 4.1 전과(戰果) 보충과 교전 보복

군경이나 행정 당국의 담당자가 여성을 남성 가장이나 친족 공동체의 부속물로 보면서, 자신에게 배당된 할당량을 채우고 전과를 올리기 위해 대살을 자행한 경우가 있었다.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이 전국적으로 자행됐다. 보도연맹원을 학살하기 위해 경찰이 소집했을 때, 소집 당사자가 피신한 경우 그의 가족을 대신 끌고 가면서 여성들을 학살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 일례로, 1950년 7월 대구의 정정희는 좌익 활동가였던 남편 이원식 대신 경찰에게 강제 연행된 뒤 실종됐다.<sup>29</sup> 대구의 여학생 손호야(19)도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아버지 대신 경찰에게 강제 연행된 뒤 실종됐다.<sup>30</sup> 이러한 사례는 군경이나 행정 당국의 담당자가 자신에게 배당된 할당량을 채우고 전과를 올리기 위해 여성을 대살한 경우로 보인다.

또한, 군경 토벌 사건에서도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뒤, 공비를 사살했다고 전과를 보고한 사례가 발견된다. 일례로, 전북 임실면 청웅면 폐금광 학살 사건의 경우 1951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군경 토벌대(제11사단 제13연대 군인과 임실경찰서 경찰 등)가 폐금광 굴 입구에서 밤낮 연기를 피워 넣는 분화 작전, 일명 ‘오소리 작전’을 벌여 굴속에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수백 명을 학살한 뒤, 현장 생존자들을 연행해 열흘 뒤 임실군 강진면 회진

---

29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09e, 596쪽.

30 진실화해위원회,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b, 124쪽.

리 멧골에서 총살한 사건이다.<sup>31</sup> 그런데 사건 후 임실경찰서는 ‘적 217명을 사살하고 24명을 생포했다’고 당국에 보고했고, 내무부 치안국은 ‘전과로는 빨치산 217명을 사살, 79명을 생포했다’고 기록했다.<sup>32</sup>

군경이 교전 후 인근의 민간인 공동체에 대한 보복성 학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1950년 9월 초순, 영천 화산면 당지리에는 국군이 인근에서 교전한 뒤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 주민을 집단 학살했다. 국군은 우선, 이 마을 청년 정동택이 입대했다가 탈영했다는 이유로 입산부인 그의 처와 4살, 3살인 동생을 포함한 일가친척 9명을 학살했다. 군경은 이들을 나무에 묶은 뒤 칼로 난자하고 총살했으며, 마을 주민 중 10여 명도 정동택과 같은 정 씨라는 이유로 학살했다.<sup>33</sup> 이처럼 보복 학살은 신체 훼손이나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여성을 학살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전했던 남성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보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 사건, 수복 후 군경토벌 작전 과정의 학살이나 부역혐의자 학살 과정에 나타난 여성 대살도 남성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강하다. 일례로,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는 한국전쟁 개전 초기 보도연맹원 등이 살해되자 인민군 점령기에 지방좌익들이 이의 보복을 위해 전북경찰국 제 18전투대대 제3중대 중대장 김용식의 일가 53명을 살해했다. 수복 후 김용식도 이의 보복을 위해 1950년 10월에 부대원을 끌고 와 친씨 일가 89명을 보복 사살했다. 희생자 중 42명이 여성이었다. 군경은 학살 현장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기도 했다.<sup>34</sup> 또한, 전라남도의 한 마을에서 젊은 여성 수십 명이 입산해 유격대원

---

31 진실화해위원회,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c, 358-368쪽.

3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21, 1987, 630-631쪽;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발간회, 『대한경찰전사, 제1집, 민족의 선봉』, 1952, 223-224쪽; 진실화해위원회, 앞의 글(2010c), 362-363쪽.

33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09c, 54-56쪽.

34 진실화해위원회, 「고창 월림 집단희생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 739-741쪽.

이 됐다는 이유로 경찰기동대가 마을 여성들을 체포해 집단 강간했던 사례도 있다.<sup>35</sup> 특히, 부역 혐의자 학살 사건은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조령’이라 함) 등의 법으로 대중들 사이에 민간인 학살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전쟁 초기의 패전 책임을 무마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결합하여 일어났다.<sup>36</sup> 이런 상황에서 인민군 점령기의 부역은 ‘반민족적 범죄’로 간주됐고 특조령은 보복을 정당화하면서 폭력을 무제한으로 분출해드 되는 ‘예외 상태’의 공간을 열어주었다.<sup>37</sup> 이처럼 부역 혐의자 학살은 가해의 측면에서 보면 민간인이 대대적 동원되어 가해 단위가 확장된 상태에서 ‘보복 학살의 대중화, 정치화’ 속에 자행됐으므로 여성 피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4.2 보급기지 차단과 남성 행위자 가문 재생산 방지

군경은 한국전쟁 전에는 제주도와 영호남 산간 지역 토벌 과정에 유격대의 보급기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 전체를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1950년 9·28 수복 후에도 호남과 영남 일부 미수복 지역에 들어가 ‘견벽청야 작전’ 등 초토화 작전을 하면서 유격대원이 많이 배출된 마을이나 유격대 근거지와 가까운 산간마을은 통비부락(적성부락)으로 규정하여 특정 가족이나 마을 단위로 민간인을 학살했다.

특히, 제주 4·3 진압 과정에 나타난 민간인 학살의 유형은 무장유격대 보급기지 차단을 위한 피신자(소위 ‘도피자’) 가족 대상이 전형적이다. 토벌대는 중산간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당국의 명령에 따라 해변마을로 소개한 주민 중에도 가족 중 청장년 남성이 한 명이라도 피신한 사람들은 ‘폭도 가족’이라며 학살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적과 대조해 피신자 가족을 찾아내 대살했다.<sup>38</sup> 도피한 남

35 김귀옥, 「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 『구술사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구술사학회, 2012, 14-15쪽.

36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됐나」, 『역사비평』 제11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184쪽.

37 김학재, 앞의 글, 110-112쪽.

3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성들의 아내는 ‘폭도 각시’라 불리며 학살 현장에서 고문과 성폭력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1948년 12월 17일 표선면 토산리에서는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청장년 남성과 젊고 예쁜 여성 125명을 선별해 끌고 가서 표선국민학교에 구금했다. 그들은 구금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12월 18일과 19일에 표선백사장에서 총살했다.<sup>39</sup> 학살 과정에는 ‘비민 분리’와 마을공동체 해체 과정이 동반됐다. 1949년 1월 13일 표선면 성읍리에서는 주민 38명이 토벌대에게 학살됐는데, 경찰은 입산자의 치료 갓 출산한 산모를 끌어내 발가벗긴 상태에서 마을 여인들에게 창으로 찌르라고 강요하고 아기와 함께 총으로 쏘아 죽였다.<sup>40</sup>

영남지역에서도 1949년 영천 북안면의 최○○(44)는 경찰에게 좌익 활동을 하던 아들 대신 끌려가 마을회관 앞에서 공개 총살됐으며, 윤○○(47) 등 일가족 5명은 장남 김○○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공개 총살됐다. 영천 화남면의 황보○(16)과 황보○(13)도 아버지가 입산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총살됐다. 이 마을에는 황보 씨 수십 명이 입산자들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1949년~1950년 사이에 학살됐다.<sup>41</sup>

이처럼 군경이 토벌 작전 중에 친족공동체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학살한 경우에는 피란이 쉽지 않은 여성·아동·노인 등 비전투원 피살 비율이 높았다. 일례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신원을 확인한 여성 피살자 2,160명 중 학살된 사유를 ‘군경 토벌 작전 중 학살’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606명(28%)으로, 한국 군경에 의한 여성 피살자 중에는 이 사유로 학살된 여성이 가장 많았다.<sup>42</sup>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정규전에서는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했으며 주로 잠재적 전투원인 청년 남성들을 표적으로 하여 학살이 자행됐다.<sup>43</sup>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좌제

391쪽.

39 위의 책, 390-391쪽.

40 위의 책, 441쪽.

41 진실화해위원회, 앞의 글(2009f), 786쪽, 802쪽.

42 김상숙, 앞의 글(2021a), 82-83쪽.

43 Jones, Adam, “Why Gendercide? Why Root-and-Branch? A Comparison of the Vendée Uprising of 1793-94 and the Bosnian War of the 1990s,” *Journal of Genocide*



를 기반으로 한 예방 학살에서는 전투원 구분이 성별이나 세대를 변수로 작동하지 않으며, 특정인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족공동체 전체를 ‘잠재적 적성분자’로 보고 그 연고 기반이나 보급 기지를 없애고 세력 확충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 학살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여성도 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았으므로 이때 일어나는 여성 학살은 전투원 학살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근대 시기에 여성에 대한 연좌제 기반 학살은 집권 세력이 적으로 간주한 남성들의 가족공동체 재생산 방지를 통해 그 가계를 절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현대의 전쟁에서도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여성 학살과 전시 성폭력은 재생산 방지를 통한 종족 말살을 목표로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한국전쟁 전후에도 여성을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로 보고 여성을 학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9·28 서울 수복 후 아산에서는 부역 혐의자 가족 수백 명이 학살됐다. ○○리에서는 우익 주민들이 자치대를 조직하여 1950년 9월 29일부터 10월 초까지 ○○ 냇가에 구덩이를 파고 부역 혐의자 가족 60여 명을 가문 단위로 처형했다. 인민군 점령기에 마을 인민위원장을 했던 노○○의 가족은 미성년자 10여 명을 포함해 영유아까지 일가 30여 명이 죽어 멸족당했다.<sup>44</sup> 1951년 1·4 후퇴 전후에 발생한 강화 교동도 사건의 경우, 신원이 확인된 피살자는 71가구 183명으로 한 가족당 평균 2.6명이 학살됐고, 피살자 중 여성이 90명(49%)이었다.<sup>45</sup> 이처럼 한국전쟁에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인종의 차이가 없음에도 ‘반공 종족주의’ 논리가 ‘빨갱이 가족(적성가족)’에게 적용되어 이념적 의미에서 구분된 특정 집단의 절멸과 재생산 방지를 위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사례가 있다. 특히, 부역 혐의 학살의 경우, 특정 가족·친족공동체를 선별하는 형태의 학살이 많았으며, 가해자들이 적으로 간주한 특정 가문을 절멸하고 가해자 후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려는 동기와 부역 혐의자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 뒤 상속자를 없애려는 경제적 동기도 있었으므로 여성과 아동 대살 사례가 많이 보인다.

---

*Research 8(1)*, Routledge, 2006, pp. 13.

44 차○○ 구술자료(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21\_007\_차○○\_06.hwp.)

45 진실화해위원회,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권, 2009a, 734쪽.

### 4.3 전투 보수 총당을 위한 약탈

교전 상황이 아니라도 전시에 군인들은 권력 과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약탈과 성폭력을 행사하고 여성을 학살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도 전시에 군인의 보수가 불규칙한 경우에 약탈과 강간은 전쟁 복무에 대한 보수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다.<sup>46</sup>

한국에서도 제주 4·3 당시 경찰과 서북청년단은 국가로부터 별다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고 약탈과 강간을 통해 생활을 유지했다. 토벌대의 주둔이 장기화하면서 군인과 서북청년단원들이 육지에 본처가 있는데도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남에 생활 기반이 취약했던 서북청년단원들은 재력가의 딸과 강제로 결혼하는 방식으로 제주도 정착을 시도했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은 남성 가족 구성원을 살리기 위해 성폭행이나 강제 결혼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례로, 성산읍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인 정○○와 약혼자 홍○○와 함께 서북청년단원에게 연행되어 주정공장 창고에 구금됐는데, 약혼자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를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을 겁탈하려던 차○○란 서북청년단 간부와 결혼했다.<sup>47</sup> 또한, 서북청년단장인 김재능이 양○○를 범했지만, 그녀는 죽을 위기에 놓인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이를 감수해야 했다.<sup>48</sup> 학살 지휘자로 악명 높았던 탁성록(당시 국군 제9연대 정보과장)도 강○○를 유명한 사회주의 활동가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범한 후 함께 살다가 죽었다.<sup>49</sup>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군경이 주둔지에서 민가를 약탈하고 성폭행을 위해 여성을 학살한 사례가 있었고, 연행한 여성 국민보도연맹원이나 부역 혐의자 가족을 구금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하거나, 성고문을 한 뒤 학살하기도 했다. 일례로 마산에서는 여성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구금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

46 수잔 브라운밀러, 편집부 편,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49-51쪽.

47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246쪽.

48 위의 글, 240쪽.

49 위의 글, 240쪽.

했다.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국은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마산 시민극장에 소집됐으며, 그중 여성이 51명 있었는데 47명은 강간에 응했고 거절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없어졌다’고 증언했다.<sup>50</sup> 그런데 마산 시민극장에 소집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마산형무소로 이송됐다가 마산 구산면 앞바다(일명 갯이바다)에 수장됐으므로,<sup>51</sup> 이 자리에서 생존한 여성 보도연맹원들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다. 통영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언에 의하면) 죄 없는 양민들을 잡아다가 창고(현 해무청 충무출장소 창고)에 감금하고는 남녀 할 것 없이 옷을 벗게 하고 그들을 강제로 정교(情交)를 맺도록 명령하고는 몽둥이로 난타한 후 20명 내지 40명씩 ‘로프’로 묶어 큰 돌을 달아 바닷물에 던져 수장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다.<sup>52</sup>

「고양 사건 형사사건 기록」에는 부역 혐의로 가족과 함께 체포된 여성이 경찰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고양군 주민 김○○(20)은 1950년 10월 5일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고양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후 고양경찰서 경무 주임 고영근이 ‘가택 수색’을 한다면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김○○을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이틀 뒤인 10월 7일에 경무 주임 고영근은 김○○을 다른 주민 13명과 함께 CIC로 넘긴다며 이송하던 과정에 또다시 성폭행했다.<sup>53</sup>

#### 4.4 점령 의례 실현

공개 총살, 귀를 자르거나 참수하는 형태의 신체 훼손 학살은 권력의 힘을 가지적

50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09d, 446-447쪽.

51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권, 2009b, 370-371쪽.

52 「남녀 모두 옷 벗겨서 살해」, 『동아일보』, 1960.5.22.

53 서울지방검찰청, 「김○○ 청취서」(단기 4283.11.6.), 『고양사건 형사사건기록』, 1950, 88-93쪽.

으로 보여주고 해당 공동체의 패배를 확인하는 점령 의례 실현의 의미도 지닌다. 또한, 군사 권력의 남성성을 과시해 패배한 공동체의 남성 절멸과 복속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학살하거나 임신부의 복부나 여성 성기(생식기)를 공격하는 등 여성의 섹슈얼리티적 측면과 재생산적 측면을 함께 공격해 학살하는 경우도 있다.

전쟁에서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 적의 머리를 자르거나 귀를 잘라 왕에게 바치면서 공을 증명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내걸어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동아시아의 여러 사회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쟁 관행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적의 수급, 또는 왼쪽 귀를 베어 조정에 바치고 종묘에 고하는 것을 헌귀(獻髓)이라 부르며 일종의 제의의 형태로 실행했다.<sup>54</sup> 일본에서도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 일본군이 조선 사람들의 코나 귀를 베어서 전공을 증명했으며,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12만6천 명의 코를 베어 간 코무덤(귀무덤)이 남아 있다. 일본군의 이러한 전쟁 관습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이어졌다. 1937년 중일전쟁 때에는 일본군 장교 2명이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누가 더 많이 참수하는지를 겨룬 100인 참수경쟁(百人斬り競争, 百人斬比賽)이라는 사건도 있었다.<sup>55</sup>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전후에 만주군 출신의 장교들은 일본도를 휘두르며 전투를 지휘했다. 또한, 국군이 토벌 대상 지역에 들어가 여성과 영유아를 집단 학살하고 목이나 귀를 잘라 학살한 사례들이 있고, 임신부의 복부나 여성 성기(생식기)를 공격해 학살한 사례도 많다.

1951년 4월,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에서는 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피란을 가지 못한 여성과 아이 10여 명을 마을 인근 골짜기로 끌고 가 숲 구덩이에 몰아넣고 모두 상의를 벗도록 한 뒤, “죽이지 않을 테니 어서 산에서 내려가라”라고 했다. 여성과 아이들은 옷을 벗은 채 산비탈을 내려갔는데, 국군은 이들을 향해 뒤

---

54 정다함, 「정벌이라는 전쟁 / 정벌이라는 제사」, 『한국사학보』 제52호, 고려사학회, 2013, 295쪽.

55 이 사건은 1937년 11월 30일 자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大阪毎日新聞)과 1937년 12월 13일 자 ‘도쿄 니치니치 신문’(東京日日新聞) 보도됐다(김홍일, 『대륙의 분노』, 문조사, 1972, 316-317쪽).

에서 총을 쏘고 쓰러진 여성들의 귀를 잘랐다. 이 사건으로 10여 명이 사망했고, 조○남(여, 18)은 귀가 잘린 채 살아남았다.<sup>56</sup> 1951년 4월 29일 완주군 동상면의 한 마을에도 제8사단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피란을 가지 못한 여성과 아이, 노인 30여 명을 총살했다. 그리고 총살한 시신들의 귀를 칼로 베었다.<sup>57</sup>

또한, 1950년 11월 17일, 남원군 대강면의 한 마을에는 국군(제11사단 수색중대)이 총을 쏘며 들어와 마을 주민 전원을 마을 앞 논으로 소집한 뒤 부역 혐의자와 빨치산 협조 혐의자를 가려내 일본도로 목을 잘라 살해했고, 일부 여성들을 마을 인근 골짜기로 따로 끌고 가서 목을 칼로 잘라 살해하거나 총살했다. 증언자들은 군인들이 일본도를 빨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다녔으며, 그들이 칼로 사람들의 목을 잘라 살해한 뒤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며 잘린 목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날 학살된 민간인은 90여 명에 달한다.<sup>58</sup> 1951년 3월 13일, 고창군 상하면의 한 마을에는 여성과 노인, 아이만 있었는데, 군경 토벌대(국군 제11사단과 경찰)가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을 모이게 한 뒤 일본도로 목을 자르고 총을 쏘아 여성과 아이까지 37명을 살해했다.<sup>59</sup>

이처럼 한국전쟁 당시 국군은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전쟁 관습을 마을 공동체의 비전투원인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실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전과를 보고하기 위해 했다가보다는, 전시 집단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토벌 작전 지역에서 전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점령 의례를 실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군국주의적 남성성을 과시하고 처벌을 시각화하여 마을 하부 단위까지 공포심을 전파해 군사 권력의 규율체계를 확립하려 한 것으

56 진실화해위원회,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3권, 2008b, 206-207쪽.

57 진실화해위원회,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권, 2009g, 569-570쪽.

58 진실화해위원회,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08a, 88쪽.

59 진실화해위원회,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권, 2010a, 464-465쪽.

로 보인다.

## 5 결론

연좌제는 전근대 시기에는 형사처벌 제도의 일종으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정치 세력뿐 아니라 그들의 친족-마을공동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한국에서는 일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에는 위로부터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과 분단정부 반대 운동을 진압하는 데 전근대의 형벌인 연좌제가 활용됐다. 국가 형성 과정에 양측의 대립은 내전 형태로 전개되면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연좌제는 정치적 반대자나 지역민을 소위 ‘적성(赤性)분자’, ‘적성(赤性)부락’으로 선별해 섬멸하면서 반공 종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학살 대상을 선별하는 수단이 됐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은 지방의 말단 단위까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반공공동체를 만들고 지방 권력을 재편해나갔다.

연좌제 기반 학살에서 전시 비전투원이 대다수인 여성들이 남성 가족 구성원 대신 학살됐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됐다. 여성 대살과 전시 성폭력은 ① 전과 보충, ② 교전 후 민간인 공동체에 대한 보복, ③ 보급기지 차단과 ‘잠재적 적성분자’에 대한 예방 학살, ④ 집권 세력이 적으로 간주한 남성들의 가족공동체 재생산 방지, ⑤ 군인의 전투 스트레스 해소와 전쟁 복무 보수 지급, ⑥ 점령 의례 실현 등을 목적으로 나타났다. 연좌제 기반 학살에서는 가족이나 부계 혈통의 친족공동체, 이들과 결합한 마을공동체나 특정 집단이 선별 단위가 됐고 여성과 아이도 적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때의 여성 학살은 전시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빨갱이’나 ‘빨갱이 가족’으로 간주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연좌제 폭력은 전후에도 이어졌다. 이 인구집단으로 간주된 사람은 하등 국민으로 격하됐고, 1980년대 초반까지 요시찰인으로 분류되어 사찰과 관리의 대상이 됐는데, 사찰·관리 대상이던 일부 여성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자신의 담당 경찰에게 성폭행당한 사례가 있으며 이 중 일부 여성은 강제 임신으로 인해 마을을 떠나야 했던 사례도 있다.

연좌제를 통한 민간인 학살과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반공 종족주의적 분리는 군사 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전파해 전후에 마을 하부 단위까지 반공 규율체계와 냉전 통치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됐다. 동시에, 전후에도 여성에 대한 연좌제 폭력은 군사적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근대국가의 근대성 확립은 가부장제와 연좌제라는 중첩된 전근대성을 활용하고 규율화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정부기관 보고서와 1차 자료)
-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발간회, 『대한경찰전사, 제1집, 민족의 선봉』, 1952, 223-224쪽.
- 서울지방검찰청, 「김○○ 청취서」(단기 4283.11.6.), 『고양사건 형사사건기록』, 1950 88-93쪽.
- 아산시·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 『충남 아산시 배방읍(설화산) 폐금광 유해발굴 조사보고서』, 2018, 67쪽.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21, 1987, 630-631쪽.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390-391쪽, 441쪽.
- 진실화해위원회, 「고창 월림 집단희생 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 739-741쪽.
- \_\_\_\_\_,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권, 2008a, 88쪽.
- \_\_\_\_\_,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3권, 2008b, 206-207쪽.
- \_\_\_\_\_,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권, 2009a, 734쪽.
- \_\_\_\_\_,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권, 2009b, 370-371쪽.

- \_\_\_\_\_,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권, 2009c, 54-56쪽.
- \_\_\_\_\_,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09d, 446-447쪽.
- \_\_\_\_\_,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09e, 596쪽.
- \_\_\_\_\_,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권, 2009f, 786쪽, 788쪽, 802쪽.
- \_\_\_\_\_,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권, 2009g, 569-570쪽.
- \_\_\_\_\_,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3)」,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09h.
- \_\_\_\_\_,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8권, 2010a, 464-465쪽.
- \_\_\_\_\_,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b, 124쪽.
- \_\_\_\_\_,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2010c, 358-368쪽.

#### 단행본

- 김상숙, 『10월 항쟁—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돌베개, 2016, 46쪽.
- 김홍일, 『대륙의 분노』, 문조사, 1972, 316-317쪽.
-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돌베개, 2010, 32쪽.
-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18쪽.
- 윤휘탁, 『일제하 만주국 연구』, 일조각, 1996, 130쪽.
- 정영진, 『폭풍의 10월』, 한길사, 1990, 308-309쪽.



권현익,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39쪽, 111쪽.

수잔 브라운밀러, 편집부 편,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49-51쪽.

중국조선족문화예술인후원회, 이상규 역, 『만주국 경찰사』, 중국조선족문화예술인후원회, 2007, 204쪽.

Katz, Esther & Ringelheim, Joan Miriam, eds., *Women Surviving the Holocaust*, New York: Institute for Research in History, 1983.

### 논문

김귀옥, 「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 『구술사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구술사학회, 2012, 7-37쪽.

김난옥, 「고려 후기 여성의 법적 지위-범죄와 형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5-63쪽.

김상숙,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31호, 한국사회사학회, 2021a, 61-100쪽.

\_\_\_\_\_, 「젠더폭력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공 TRC의 시도를 통해 본 한국 진실화해위의 과제」, 『NGO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NGO학회, 2021b, 39-76쪽.

김영범, 「연좌제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망: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24호, 한국사회사학회, 1990, 324-347쪽.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연구』 제14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0, 82-118쪽.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제11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172-198쪽.

심재우, 「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55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87-113쪽.

양봉철, 「홍순봉과 제주4·3」, 『4·3과 역사』 제17호, 제주4·3연구소, 2017, 25-145쪽.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엮음,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236-256쪽.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권 제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3-29쪽.

이동명,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연구」, 『법학연구』 제34호, 한국법학회, 2009, 1-18쪽.

정다함, 「정벌이라는 전쟁 / 정벌이라는 제사」, 『한국사학보』 제52호, 고려사학회, 2013, 272-306쪽.

Jones, Adam, “Why Gendercide? Why Root-and-Branch? A Comparison of the Vendée Uprising of 1793-94 and the Bosnian War of the 1990s,”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8(1), Routledge, 2006, pp.9-25.

#### 기타 자료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謀反大逆」

「남녀 모두 옷 벗겨서 살해」, 『동아일보』 1960.5.22.

변숙현 구술자료(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21\_007\_변숙현\_06.hwp)

차○○ 구술자료(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번호 OH\_21\_007\_차○○\_06.hwp)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Massacre of Civilian Women and Wartime Sexual Violence with a Focus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and *Taesal* (“Replacement Killing”)

Kim Sangsook

During the period beginning with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up until the Korean War, foreign powers and the upper class suppressed the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nation-state.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this confrontation developed into a civil war, and massacres of civilians by the military and police took place on a large scale. In the process of actively pursuing anti-commu-

nist tribalism by identifying political opponents and local people as “red” (communist) elements, pre-moder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became a means of selecting victims for massacre. In these massacres based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women—the majority of whom were wartime non-combatants—were slaughtered instead of male family members and becam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Massacres of women and wartime sexual violence were carried out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consolidating war achievements; (2) retaliating against civilian communities after engagement; (3) preventing attempts to support the enemy; (4) preventing the reproduction of family communities by men who are considered enemies by the ruling powers; (5) relieving combat stress of soldiers and paying for war service; and (6) securing occupation rites, and more. In massacres based on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family and kinship communities of paternal lineage, as well as village communities and specific groups, became targets for elimination, and women and children were also seen as key members of “enemy” communiti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massacres of women at this time were not simply the collateral damage of war.

Key words: Korean War, massacres of female civilians, wartime sexual violence, collective family punishment, *taesal* (replacement killing)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